○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를 단일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
-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 관련시설, 노인복지 관련시설, 부랑인보호 관련시설, 아동·부녀복지 관련시설 등 총 39개 적용대상 시설을 규정하고,
-부랑인 보호시설과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자격을 정하며,
-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임.

○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시설관리운영위탁 사항은 '98.4.30 제정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, 통합조례로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, 우리 위원회 소관중 여성발전센터는 2000. 7. 25 제정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.

○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관리 및 위탁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

나.안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은
-이미 수탁자가 확정되었기에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서울특별시보에만 게재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, 가급적이면 행정의 투명성 확립차원에서 서울특별시보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홍보매체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함이 좋겠다고 생각됨.

다.안 제7조(수탁자 선정)

○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,
-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제반 수탁자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라.기 타

○이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혐오시설로 비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며,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(시설관리 등)등에 대하여도 별도 이견이 없음.

.....

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사업)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
2.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
3.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
4.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
5.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
6.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·운영
7.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
8.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
9.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

10.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

제3조(사업의 위탁)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보고)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"를 "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

2.노인·장애인복지 및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·제도개선사항 심의·건의

3.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

4.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·의결

5.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·건의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(1)부시장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된다.

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(1)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

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와 아동·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
2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 또는 아동·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

3.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